

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사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70,000천원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70,0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270,000천원		270,000천원	0 %	
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270,000천원		270,000천원	0 %								
사업내용	○ 추진위원회 및 조합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자치구										

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방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	적정
운영비보조	해당없음	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재생본부	재생협력과	진경식 2133-7190	진경은 2133-7186	백건호 2133-7189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	(x-) 7,475,000	(x-) 270,000	(x-) Δ7,205,000	(x-) Δ96
사무관리비	(x-)	(x-)	(x-) 10,000	(x-) 10,000	(x-)
자치단체경상보 조금	(x-)	(x-) 7,475,000	(x-) 260,000	(x-) Δ7,215,000	(x-) Δ96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사무관리비	○ 직권해제 자문회의 개최비용 10,000,000원 = 10,000천원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 200,000,000원 = 200,000천원
	○ 주민 찬반의사 조사 60,000,000원 = 60,0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일부 지원
- 도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과도한 부담 예상, 구역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 직권해제하고,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
-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지원 근거 : '15.9.1 개정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('16.3.2 시행)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
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6항(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)
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3(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)

-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, 제15조의4(직권해제, 사용비용 보조 세부기준 규정)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뉴타운·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(시장방침 제43호, 2012.2.20.)
 - 뉴타운·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(시장발표, 2015.04.23.)
 - 뉴타운·재개발 관리대책 추진계획(시장방침 제155호, 2015.06.10.)
 -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진행 중(2016.11월 준공예정)

□ **사업내용**

- 사업기간 : 2017. 1 ~ 2017. 12
- 사업내용
 - 직권해제되는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의 및 조합의 사용비용 중 검증금액의 70% 보조
- 총사업비 : 270,000천원

□ **추진경위**

- 2012.01.30 : 정비사업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 발표
- 2012.02.01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
 -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규정 신설
- 2012.07.31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
 - 사용비용 보조 범위에 대해 조례로 포괄위임
- 2012.12.31 :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
 - 사용비용 보조비율(70%) 및 보조방법,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용용도 등
- 2013.01.09 :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 전문가 풀(Pool) 구성
- 2014.11.27 : 2015년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계획 수립
- 2015.04.23 : 뉴타운·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(시장발표)
- 2015.06.10 : 뉴타운·재개발 관리대책 추진계획 수립
- 2015.09.01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포
- 2016.02.29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시행령 개정 공포
- 2016.03.24 :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공포 및 시행

□ **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**

- 본 사업은 2012.01.30 뉴타운·재개발 수습방안 발표(시장발표) 후 장기 침체되어 재건축·재개발이 어려운 정비(예정)구역의 원활한 해제를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사업주체의 과도한 지출비용을 보조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市 정책 사업으로

- 신규예산은 2016.03.2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직권해제된 구역의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대상 중 사용비용 내역이 확인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를 위하여 필요함

□ 사업추진절차

○ 집행절차

-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⇒ 사용비용 보조 관련 대표자 선정등 의결(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) ⇒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(대표자) ⇒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검증(구청장) ⇒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통보(구청장) ⇒ 사용비용 지급 신청(대표자) ⇒ 사용비용 지급(구청장)

□ 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70,000	
전문가 자문비	2017.01~2017.12	10,000	직권해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
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	2017.01~2017.12	260,000	추진주체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및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 실시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○ 사전검토 비용(14개소) 및 사용비용 지원 4개 구역(819,373천원)
2015년도	○ 사용비용 지원 9개 구역(3,498,208천원)
2016년도	○ 사전검토 비용(8개소) 및 사용비용 지원 5개 구역(1,119,591천원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부동산 경기침체,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추진주체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원활한 수습 추진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